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5년 12월28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월27일(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 오광해 과장(043-870-5550), 윤동섭 연구사(5553)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불합리한 기술규제 개선 추진

- 규제개혁위원회, 소형풍력발전 시공기준 완화 등 17개 과제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경제 4단체,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는 17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 '15.12.24(목)일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선방안을 확정지었다.

* 기술규제 : 정부가 국민안전 등을 목적으로 제품·서비스에 대한 특성, 제조방법 등에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표준, 기술기준, 시험인증 등을 포함
예) 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 이번 17개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관부처에 개선권고 되며, 각 부처에서는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된다.

□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17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준 개선과제 9개, 이중부담을 가하는 유사·중복제도 개선과제 4개, 규제수준이 미흡한 기술규제 개선과제 4개이다.

○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준 개선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 현재 소형풍력발전을 설치하려면 50m이상의 이격거리를 만족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개발되는 소형 풍력설비는 소음이 적은 만큼 이격 거리 기준을 '16년 6월까지 타워높이(일반적으로 5~10m)의 2배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 친환경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용 목재팰릿(파쇄·건조·압축하여 만든 목재연료) 보일러 보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공실적이 30%를 차지하여 신규 사업자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 '16년 1월부터 시공실적 비중을 25%로 완화하고, 목재팰릿 보일러가 아닌 다른 보일러의 시공실적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 제품(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구매 기준에서 선풍기를 날개 지름의 크기와 일반형 선풍기로 제한하고 있어, 날개 없는 선풍기 등의 신제품은 효율이 높아도 공공조달이 불가능한 문제를 '16년 6월까지 개선한다.

-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를 신청할 때, 서류의 양과 종류가 많고 복잡하여 신청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제출서류와 양식을 간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 이 외에도 우산·선글라스 등의 제조연월일 표시 등을 완화하고, 목재팰릿 원료의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며, 음료·소주·건강기능식품 등에는 허용되는 사카린나트륨을 과실주에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 이중부담을 가하는 유사·중복제도 개선과제로는

- 국제협약인 「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라 국제인증(EIAPP, 선박엔진의 대기오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선박의 배기가스 정화장치에 대해 국내에서 중복해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국제인증을 받은 경우는 형식승인을 제외하도록 했다.

* EIAPP : Engine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

- 난방판넬의 경우 온도조절기와 결합하여 동작하는데, 온도조절기가 변경될 때마다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난방판넬에 대한 안전성 시험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해소하기로 했다.

- 계량기 형식승인에 부적합된 제품을 재시험 신청 할 때, 기존 합격한 시험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시험을 다시 진행하여 신청인의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 계량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험항목은 재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2-28 09:35:26

○ 또한, 규제수준이 미흡하여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기술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 에어컨 등 냉난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 국내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저품질·저효율 외산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수입·유통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탐지하는 설비 중 하나인 화재수신기는 현재 전화기능 유무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등급 구분을 없애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동작여부 및 상태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신기내에 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 이 외에도 원자력이용시설의 관리구역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건설구조용 철강재 국가표준(KS)품질기준을 해외 수준으로 상향하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이번 기술규제 개선내용과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이중 시험비용 경감, 저품질 수입제품에 대한 국산제품의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관계 부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협력해

○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17개 기업애로 기술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현장중심의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 윤동섭 연구사(☎043-870-5553)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기업애로 기술규제 개선과제 목록

1 기업부담을 가중하는 과도한 절차·기준개선 (9개과제)

번호	과제명	문제점	개선방안	소관부처
1	소형풍력발전 시공기준 완화	소형풍력발전을 설치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침」에 따른 이격거리(50m 이상)를 만족하여야 함	최근 개발되는 소형 풍력 설비는 소음이 적은 만큼 이격거리의 기준을 완화	산업부 ('16.6월)
2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등록사업 평가기준 개선	'산업용 목재펠릿(파쇄·건조·압축하여 만든 목재연료)보일러' 보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심의기준 중 시공실적이 30%를 차지하여 신규 업체는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	사업참여 업체 심의 시 시공실적 비율 하향조정하고, 다른 보일러 제조·시공 실적도 인정토록 관련 규정 개정	산림청 ('16.1월)
3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 구매 가이드라인 개선	날개 없는 선풍기, 원통형·수직형 선풍기 등은 효율이 높아도 녹색기준 제품으로 공공조달이 불가능	공공조달 녹색 제품 구매시 선풍기 제품의 적용 범위(날개지름의 크기 및 축류형 팬으로 제한)를 개정	조달청, 산업부 ('16.6월)
4	건설기계 배출가스 [illegible] 간소화	신청 서류의 양과 종류가 과도하여 관련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	건설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인증에 필수적인 사항만 포함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 및 별지 양식 간소화	환경부 ('16.6월)
5	공산품의 제조연월 표시기준 완화	가정용 섬유제품과는 달리 선글라스·우산(양산)·접촉성 금속장신구 등은 제조연월 표시만 허용	㉠우산(양산)은 표시사항 중 제조연월 삭제, ㉡선글라스·접촉성 금속장신구도 제조·수입 연월, 로트번호 중 선택하여 표시토록 세부 품목별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	국표원 ('16.2월)
6	목재펠릿 원료 이력증명 서류 간소화	품질검사 신청 시 목재펠릿 원료 이력 증명을 위하여 '벌채허가서 및 원자재수급 영수증' 제출하여야 하나 사실상 서류 제출이 어려움	서류제출을 없애고, 별도 서식을 마련하여 대체	산림청 ('16.9월)
7	과실주에 사카린나트륨 사용 허용	사카린나트륨은「식품첨가물 기준·규격」에서 음료류, 건강기능식품, 탁주, 소주 등의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나, 과실주에는 불허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및 「주세법 시행령」에 사카린나트륨 사용 허가	식약처, 기재부 ('16.12월)
8	선박검사 업무대행 기관 확대	정부검사 대행기관이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선급" 2개 기관으로 국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선박검사업무 대행시키는 방안 추진	해수부 ('16.10월)
9	대기오염 초과배출부과금 적용기준 개선	공장 운영 중 돌발적인 설비이상으로 가동 정지 시 높은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것으로 처리되어 초과배출 부과금을 처분	가동중지 등에 따라 불합리하게 오염물질이 산정된 경우 초과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15.12월)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2-28 09:35:26

2 유사 · 중복되는 제도 · 기준 개선 (4개과제)

번호	과제명	문제점	개선방안	소관부처
1	배기가스 정화장치의 형식승인 절차 개선	「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라 130kw를 초과하는 모든 선박에 탑재하는 디젤엔진에 대하여 국제기관 대기오염인증(EIAPP)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SCR)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	국제기관 대기오염증서(EIAPP)를 보유한 엔진에 설치된 배기가스정화장치에 대하여 형식승인 제외	해수부 ('16.10월)
2	난방용 전열보드의 안전성 시험검사 방법 개선	난방용 전열보드는 온도조절기와 설치 면적에 따른 다수의 난방 판넬이 결합·설치되어 인증제품 단독으로는 사실상 설치 불가하나 난방 판넬에 연결되는 온도조절기가 변경될 때마다 인증이 요구	난방판넬 자체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기준을 별도 제정하여 안전성 위주의 제품 안전관리 방식으로 개선	국표원 ('16.3월)
3	계량기 형식승인 재시험 시 기합격 시험항목 면제	계량기 형식승인에서 부적합 제품의 재시험 신청 시 기존에 합격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도 모든 시험을 다시 진행함에 따라 시간 및 비용에 대한 신청인 부담 발생	형식승인 부적합으로 인한 재시험시 이전에 합격한 시험항목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마련	국표원 ('15.12월)
4	목재 제품의 규격·품질기준과 KS의 부합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기준이 KS표준과 상이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에 준하여 KS표준 개정	산림청 ('16.12월)

3 규제수준이 미흡한 기술규제 합리화 (4개과제)

번호	과제명	문제점	개선방안	소관부처
1	건설구조용 철강재 KS 품질기준 개선	철강재의 KS 수준이 해외표준보다 낮아, 저품질 수입제품 차단효과가 미흡하고, 해외 건설시장 진출에 애로	주요 선진국 수준(EU, 미국 등)으로 KS품질기준을 개선하여 안전성 강화 및 對수입재 경쟁력 확보	국표원 ('16.1월)
2	냉난방기, 최저에너지 효율 규제 효율적 적용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낮은 최저소비효율기준으로 저품질·저효율 외산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수입·판매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토록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개정	산업부 ('16.7월)
3	원자력이용시설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 개선	원자력이용시설의 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의 상한치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보다 느슨하게 관리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	수시출입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간 선량한도(12mSv)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원안위 ('16.3월)
4	화재수신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선	화재 수신기는 1, 2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기능상 전화 기능유무 외에 차이가 없어 구분이 불필요하고, 소방시설 작동여부 확인을 위한 기록유지기능 추가필요	제품의 1,2급 구분을 없애고, 수신기내에 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안전처 ('16.1월)